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5. 30 선고 2023가단549733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

담당변호사 이정민

변 론 종 결 2024. 4. 18.

판 결 선 고 2024. 5. 30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D 사이에 2020. 4. 8. 체결된 상속재산
협의분할을 취소한다.

피고들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/8 지분에 관하여 소외 D의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. 6. 12. 접수 제101457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

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'취소원인을 안 날'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,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,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,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,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(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).

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. 6. 2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1500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. 7. 10.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, 원고는 늦어도 위 2020. 6. 29. 채권자취소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,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. 12. 14.

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규정된 1년의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,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황지원

별지